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5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손 술
최혁진 · 민병덕 · 윤종오
이주희 · 김준형 · 박해철
용혜인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

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7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공사 개시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5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 ----- ----- ----- -----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략)

<신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

-----.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공사 개시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 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 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 · 제3항 · <u>제5항(건설공사도급 인만 해당한다)</u>,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 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 8. (생략) ⑤ ~ ⑦ (생략)	----- ----- ----- ----- -----<u>제5항 · 제6항</u>----- ----- ----- ----- ----- -----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